

충청북도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# 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남범우

# 충청북도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이옥규의원 등 8인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21년 4월 13일

○ 회부일자 : 2021년 4월 16일

3. 제안이유

- 「주거기본법」(2015.12.23.) 및 「공동주택관리법」(2016.8.12.)이 「주택법」에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주택법에서 삭제된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(안 제3조)
- 설비계획 및 우수계획(안 제4조)
-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(안 제5조)

5. 검토의견

- 이 조례는 「주거기본법」(2015.12.23.) 및 「공동주택관리법」(2016.8.12.)이 「주택법」에서 분리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 임: 충청북도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. 끝.